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 의 자 : 이주희 · 송재봉 · 이병진
박정현 · 김 윤 · 김상욱
김한규 · 조인철 · 조승래
김남근 · 김우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을 뿐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, 공판의 일시·장소, 가해자의 출소·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.

이에 따라 수사·재판 및 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공판 일정, 출소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변동 사항의 통지 제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,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보복 범죄 등 위험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수사기관, 법원,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은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,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피해자의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

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).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형사절차 관련 정보 등 안내 의무) ① 수사기관, 법원,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기관”이라 한다)은 범죄피해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시점에 범죄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1. 수사기관: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조사하는 때 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처분하는 때
2. 법원: 공소가 제기된 때 및 판결을 선고하는 때
3. 교정기관: 가해자가 석방·가석방·이송되는 때
4. 보호관찰기관: 보호관찰이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때

② 관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제8조제2항에 따라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
2. 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 및 절차

3.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

4.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관계기관의 연락처

③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서면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, 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중 범죄피해자등이 요청(동의를 포함한다)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, 범죄피해자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.

④ 관계기관은 범죄피해자가 안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또는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내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4(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 지원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

2. 제9조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호 조치 신청에 관한 상담

2. 신청서 작성 지원

3. 법률 대리인 연계 지원

4. 그 밖에 보호 조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

③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 조치 신청을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,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3(형사절차 관련 정보 등 안내 의무) ① 수사기관, 법원,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기관”이라 한다)은 범죄피해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시점에 범죄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</u> <u>1. 수사기관: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조사하는 때 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처분하는 때</u> <u>2. 법원: 공소가 제기된 때 및 판결을 선고하는 때</u> <u>3. 교정기관: 가해자가 석방·가석방·이송되는 때</u> <u>4. 보호관찰기관: 보호관찰이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때</u> <u>② 관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<u>1. 제8조제2항에 따라 형사절차</u>

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

2. 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 및 절차

3.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

4.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관계기관의 연락처

③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서면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, 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중 범죄피해자등이 요청(동의를 포함한다)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, 범죄피해자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.

④ 관계기관은 범죄피해자가 안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또는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

<신 설>

니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내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4(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 지원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

2. 제9조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호 조치 신청에 관한 상담

2. 신청서 작성 지원

3. 법률 대리인 연계 지원

4. 그 밖에 보호 조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

③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범죄피해자가 요청

	<u>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 조치 신청을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.</u> 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구체 적인 방법,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	--